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Daegu Digital Innovation Promotion Agency

「2025년 SW융합클러스터2.0」
거버넌스 신규과제발굴 지원사업 3차 추가 모집공고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는 대구-제주의 특화산업인 스마트시티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2025년 거버넌스 신규과제발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공고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27일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거버넌스 신규과제발굴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9. 30.(예정)

■ **사업목적**

○ 스마트시티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

○ 수요기반 도시 서비스 개발 관련 신규과제 제안으로 지역 내 사회적 요구 충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의 ICT·SW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디지털산업 혁신성장 기여

2 지원사업 세부내용

■ **지원규모** : 총 2개社 지원 (과제당 5백만원) / 추가 모집규모: 1개社

■ **지원분야** : 스마트시티* 산업 관련 분야

■ **지원내용** : 거버넌스 신규과제발굴 컨설팅 관련 제반비용 지원

※ 일반수용비(전문가활용비 등), 사업추진비, 국내여비(컨소시엄 구성시) 등 [별첨1] 참조

* 스마트시티 산업이란?

-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등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수집한 데이터로 도시운영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SW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대구시에서는 '대구광역시 스마트 도시 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시민공감도시, 기업상생도시, 공간혁신도시를 목표로 스마트 도시 서비스 6대 서비스 분야를 정의함

① 스마트 교통	**② 스마트 안전**	**③ 스마트 환경**
④ 스마트 복지	**⑤ 스마트 경제**	**⑥ 스마트 행정**

① (교통) 실시간 지능형 교통체계 구현, 스마트모빌리티 확대 기반 마련
② (안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 ICT·SW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안전관리
③ (환경)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기 질, 수질확보, 스마트 자원순환 기반 마련
④ (복지) 고품질 데이터복지 실현,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
⑤ (경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형 산단 구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⑥ (행정) 데이터 기반의 대구 스마트시티 조성, 대구스마트시티 거버넌스 마련

■ 기타사항

○ 차년도 SW융합 서비스 개발 상용화 지정과제* 추진시 **해당 과제로 발굴된 내용 활용 예정**

※ 2026년도 SW융합 서비스 개발 상용화 지정과제(안) 활용 예정

○ **지원기관에서** 신규과제발굴 컨설팅 관련 **전문가 매칭 진행**

※ 기업에서 필요시 추가 전문가 선정 후 컨설팅 진행 가능

○ **초광역(대구-제주) 컨소시엄 구성시 가점(3점)** 부여

3 지원대상 및 의무사항

■ 지원대상

○ 주관기업 단독 또는 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주관기업의 본사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IT/SW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참여기업의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IT/SW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에 **하단 표준산업 소분류코드 포함**기업

코드	표준산업 소분류(3digit)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지원 제외 대상

1. 주관기관(업), 참여기관(업), 주관기관(업)의 장, 참여기관(업)의 장,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관련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2.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업), 주관기관(업)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업), 참여기관(업)의 장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업의 부도
   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다.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기업
   라.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
3. 기타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관리기관장이 지원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기관,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의 경우
   가. 관리기관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업) 또는 참여기관(업)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경우
   나. 관리기관에 접수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상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의무사항

1. 일반수용비 내 위탁정산수수료 의무 편성(별첨1 참조)
   ※ 컨소시엄 구성시 제주 기업과 업무 논의 등 관련하여 국내여비 산정 가능
2. 일반수용비(전문가활용비, 위탁정산수수료(필수)), 사업추진비(회의비), 여비(국내여비) 산정 가능
3.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지정된 위탁회계법인의 정산** 추진 필수
4. 지원금으로 이루어진 사업비는 **부가세 불포함**
5. 신규 계좌 개설을 통한 **별도 통장 관리 및 법인클린카드** 발급 사용
6. 신규과제발굴 **컨설팅 회의 10회(회의록(회의사진 포함) 필수) 이상, 결과보고서 1식, RFP 1식** 필수 도출

4 추진일정

■ 추진일정(안)

사업 공고	2025.06.27.~07.08.	o 사업공고 - 2025.07.08.(화) 16:00까지
▼		
과제 접수	2025.07.07.~07.08.	o 과제 접수 기간 - 2025.07.07.(월)~07.08.(화) 16:00까지
▼		
평가추진	2025.07.10.	o 서면평가
▼		
결과통보	2025.07.11.	o 선정평가 결과 통보 및 수정사업계획서 안내 ※ 결과 홈페이지 게재 예정
▼		
협약체결	2025.07 中	o 전담기관-수행기업 간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기준

■ (1단계) 기본사항 평가(서면)

○ 기본사항 : 1개 이상 부적합할 경우 탈락조치 ※ 탈락조치 시 서면평가 진행 불가

○ 평가위원 : 사업담당자, 외부전문가(회계사 등)

○ 평가기준 : 지원자격 및 제외사항, 재무현황 등 서류 적합성 검토 [별첨2] 참조

평가항목	평가내용	확인자료	배점
지원자격사항	주관기업 본사 소재지가 대구인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Pass / Fail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종목에 공고상 조건인 소분류코드 포함기업	사업자등록증	Pass / Fail
지원제외사항	과제 중복성 여부	NTIS 검토결과	Pass / Fail
	참여제한 여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NTIS 검토결과	Pass / Fail
	기타 규정 또는 공고내용 위반 여부	확약서	Pass / Fail
재무현황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상태 여부	재무제표	Pass / Fail
기업신용도	(정량평가) 기업신용도평가등급(객관지표) ※ 주관기업 등급만 평가	기업신용도	10점

■ (2단계) 사업평가(서면)

○ 평가위원 : ICT/SW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 평가기준 : 평가위원의 산술평균점수(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기업의 결격사유 및 협약포기 등 사유 발생 시, 차순위기업 최종 선정
※ 선정기업이 없거나 최종 선정규모 미달 시, 추가 모집 공고 진행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정량 평가 (10점)	기업신용 평가등급 (10점)	o * 기업 신용도	o 기업신용평가등급(객관지표) - 신용평가등급 기준표 참고 - 주관기업 등급만 평가 - 공공기관 제출용 확인서 - 유효기간이 제출일을 포함한 확인서	10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정성 평가 (90점)	사업계획 (30점)	o 목적 부합성	o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부합성 - 지역 현안을 고려한 기획 적절성 -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 과제 성과 목표의 적절성 - 추진일정, 산출물의 타당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o 성과목표의 적절성, 합리성	15
		o 사업수행능력	o 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 - 컨소시엄간 역할구분의 적절성 - 경영여건, 의지, 노하우 등 전문성 등	10
		o 추진전략 및 체계	o 추진전략 및 체계의 타당성 - 추진전략, 추진체계 적정성 - 조직/참여인력 구성 등 조직 전문성	5
	기술성 (20점)	o 기술성	o 과제의 기술적 우수성 - 과제의 기술성 - 과제의 추진 가능성 -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및 시장성	20
	상용화 가능성 (30점)	o 상용화 구체성	o 상용화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상용화 추진계획 범위의 적정성 및 구체성 - 개발 내용, 수요 대상자 등 상용화 계획의 체계성 및 필요성	20
		o 사업성	o 사업화 가능성 - 개발 결과의 상용화 시기 및 시장 진입 가능성 - 가격경쟁력, 시장발굴 및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10
	지역경제 파급효과 (10점)	o 성과 파급력	o 과제 종료 후 지역경제 파급효과 - 현장적용, 타지역 확산 가능성, 매출성장, 시장진입 등	10
	우대사항 (3점)	o 컨소시엄 구성	o 컨소시엄 구성 - 초광역(대구-제주) 컨소시엄 구성시	3
합 계				103

<* 기업신용도 평가점수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8점
B+, B0, B-	B-	B+, B0, B-	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점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5.07.07.(월) ~ 07.08.(화) 16:00까지

※ 접수기간 및 시간 엄수(시간초과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dh0814@dip.or.kr) ※ 16:01 이후 접수 불가

○ 문 의 처 : 디지털산업본부 SW산업팀(☎053-215-3677, ✉dh0814@dip.or.kr)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양식제공	비고
1	사업계획서 직인날인본(PDF파일&한글파일) 각 1부	○	한글/PDF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PDF
3	지원사업 수행기업 확약서	○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5	보안서약서	○	
6	유사과제 사전검색 확인서(NTIS 중복성 체크 결과 사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에서 유사과제 검색결과 제출	○	
7	컨소시엄 수행확약서 ※ 컨소시엄 구성시에만 제출	○	
8	지원기업 현황자료	○	
9	사업자등록증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제출		
10	법인등기부등본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제출		
11	2022~2024 재무제표(3개년 재무제표) ※ 국세청, 회계사 공증서류만 인정 가능		
12	2025년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공기관 제출용, 유효기간이 제출일을 포함		
1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과제 제출일 기준		
14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참여인력 포함		
15	① 국세 납입증명서, ② 지방세 납입증명서		
16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참여인력별 근로소득원청징수부(인건비확인용) - 6개월 이전~제출일 기준 - 신규채용에 따른 미가입시 증빙자료 제출		
17	주요경영진 프로필		
18	기술소개 및 보유현황		
19	특허출원증/등록증 등		

※ 모든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폴더로 정리하여 압축파일로 제출

※ 파일명 : [기업명] 2025년 거버넌스 신규과제발굴 지원사업.zip

※ 최종 과제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 추후 협약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보증보험증권, 청렴이행각서 등)

7 유의사항

■ 신청 및 접수

1.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다만 서류 검토에 따라 미비한 점에 대해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수 있음
2.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3. 본 공고내용은 지원기관(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내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를 추진함
4.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해약,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을 통해 유사과제 및 제재정보가 확인될 경우, 과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유사과제가 조회될 경우, 기존 과제와 차별성을 작성하여 제출
6. 평가결과는 평가일 이후 7일 이내 지원기관 홈페이지 상 공지 예정

■ 검토 및 평가

1. 신청기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관리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른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기업이 지원 규모 미달일 경우, 기간 및 일부 내용을 달리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3. 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사업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수행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관리기관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 지원사업 수행

1.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업의 책임으로 간주함
2. 기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 계약(협약)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그 내용을 신속히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3. 지원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수행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과제의 불성실수행 평가결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귀책정도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사업비 집행관리를 위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동계정과 연동된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는 과제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
5.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회계정산수수료 비용 등은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며,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이후 사업비 지급 예정 * **해당 지원사업의 경우 사후 정산 시행**
   ※ 보증금액은 협약 지원금의 100%,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함
   '사업시작일∽사업종료일 + (최소) 150일까지'
6.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협약체결 이후 사업비 지급 이전까지 납부 및 제출하여야 함
7. 관리기관은 과제 진행상황 수시점검에 따라 수행기업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8. 수행기업은 추진내용, 진행 상황 및 결과물에 대한 서면, 대면보고, 발표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결과보고

1. 과제완료 후 수행기업은 결과보고서 및 성과(실적)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2.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사업기간 종료 후 보조금 미집행 금액, 불인정 판정금액, 이자발생액 등은 전액 반납하여야 함
4. 수혜기업은 협약종료 후 성과관리(매출, 수출, 고용 등)를 위한 증빙자료에 대한 제출 협조 의무가 있음

별첨1 사업비 운용 규정 및 비목안내

<table>
<tr><th>비목</th><th>세목</th><th>적용대상</th><th>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th></tr>
<tr><td rowspan="3">운영비</td><td rowspan="3">일반수용비</td><td rowspan="3">○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td><td>○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td></tr>
<tr><td><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td></tr>
<tr><td><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정
<table>
<tr><th>사업비 규모</th><th>표준수수료</th></tr>
<tr><td>• 5천만원 미만</td><td>600천원</td></tr>
<tr><td>•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d><td>800천원</td></tr>
<tr><td>•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td><td>1,000천원</td></tr>
<tr><td>•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td><td>1,500천원</td></tr>
<tr><td>•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td><td>1,600천원</td></tr>
<tr><td>•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td><td>1,800천원</td></tr>
<tr><td>• 30억원 이상</td><td>2,100천원</td></tr>
</table>
<table>
<tr><th>참여기관수</th><th>가산금</th></tr>
<tr><td>1개</td><td>표준수수료의 10%</td></tr>
<tr><td>2개이상</td><td>1개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가산
(2개 15%, 3개 20%)</td></tr>
</table></td></tr>
<tr><td>여비</td><td>국내여비</td><td>○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td><td>○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 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td></tr>
<tr><td>업무추진비</td><td>사업추진비</td><td>○ 회의비(식대성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td><td>○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지급</td></tr>
</table>

별첨2 사전검토기준(지원 제외 대상)

구분	지원 제외 대상
검토 기준	1. 주관기관(업), 참여기관(업), 주관기관(업)의 장, 참여기관(업)의 장,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관련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2.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업), 주관기관(업)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업), 참여기관(업)의 장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업의 부도 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다.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기업 라.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 3. 기타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관리기관장이 지원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기관,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의 경우 가. 관리기관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업) 또는 참여기관(업)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경우 나. 관리기관에 접수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상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참여 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